

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 안내

외국인 유학생(D-2)이 아르바이트 참여 시 사전에 전주대학교를 통해 전주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는 활동은 ‘불법취업’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

>> 신청대상

- ▶ 학부, 대학원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(D-2)
 -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학점(2.0) 이상 받은 자 가능

※ 허가 제외 대상: 학부생 중 졸업요건 미비, 논문 작성, TOPIK 미취득 등으로 추가학기 재학자

>> 아르바이트 활동 허용 시간(전주대 유학생 기준)

과정	학년	아르바이트 활동 허용 시간		
		한국어 능력 기준 ① 한국어능력(TOPIK) 또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	주중	주말 · 방학
학사	1~2학년	① TOPIK 2급 이하 ② KIIP 1단계, 2단계 또는 사전평가 61점 미만	10시간(주말 · 방학 포함)	
		① TOPIK 3급 이상 ② KIIP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	25시간	무제한
	3~4학년	① TOPIK 3급 이하 ② KIIP 3단계 이하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미만	10시간(주말 · 방학 포함)	
		① TOPIK 4급 이상 ②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	25시간	무제한
석 · 박사	재학생	① TOPIK 3급 이하 ② KIIP 3단계 이하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미만	15시간(주말 · 방학 포함)	
		① TOPIK 4급 이상 ②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	30시간	무제한
	수료생	① TOPIK 4급 이상 ②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	30시간(주말 · 방학 포함)	

※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: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점(NEW TEPS 327점) 이상일 경우 허용

>> 아르바이트 제한 활동

- ▶ 개인과외, 배달대행업체 라이더, 원거리(1시간 이상), 제조업, 계절근로, 유통업소 및 유학생 신분을 벗어난 활동(단,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 소지자 가능)

※ 아르바이트 허가 제외 사항

- ▶ 유학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, 상금 또는 교내조교, 근로장학생 등
- ▶ 일시적인 일상 가사 보조 또는 사무보조, 경찰 통역, 조언·감정, 행사 참가, 영화 또는 방송 임시(1회 및 비연속성)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

아르바이트 신청 방법 및 위반 범칙금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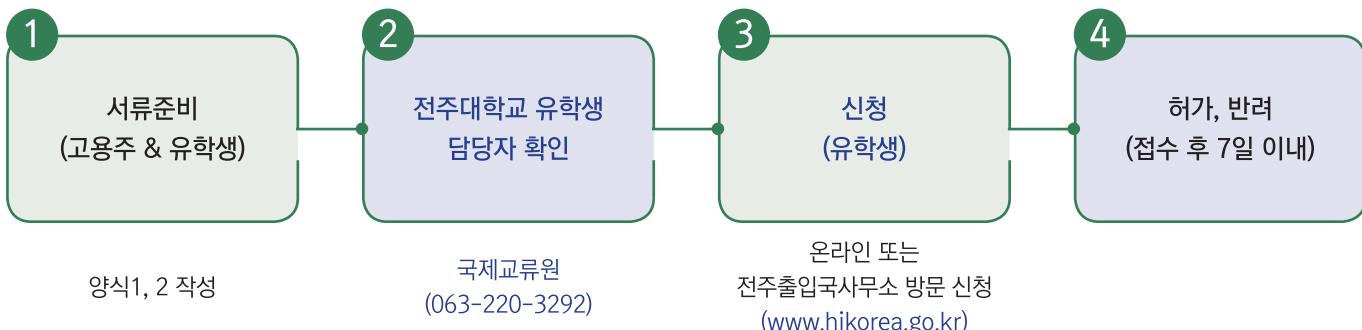
>> 제출서류

사업주	유학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표준근로계약서(양식 1)시간제취업 확인서(양식 2)사업자등록증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여권외국인등록증성적 증명서TOPIK 성적표통합신청서



* 표준근로계약서(양식 1) 및 시간제취업 확인서(양식 2)는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홈페이지(jj.ac.kr/olia)→게시판→자료실→36번 게시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

>> 신청 절차



{ 국제교류원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
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세요~!! }

>> 아르바이트 위반 범칙금 안내

허가 없는 아르바이트 기간 및 범칙금	유학생	
	허가 없음	허가 받았으나 조건 위반
1개월 미만: 200만원 1개월~3개월 미만: 300만원 3개월~6개월 미만: 400만원 1년 미만: 700만원 2년 미만: 1,000만원 5년 이상: 2,000만원	1차 적발: 범칙금 및 경고 2차 적발: 강제 추방	1차 위반: 범칙금 및 엄중 경고 2차 위반: 전 유학 기간 아르바이트 불허 및 범칙금 3차 위반: 강제 추방

*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취업의 경우, 적발 횟수와 무관, 예외 없이 강제추방

*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(아르바이트 미신고) 등을 위반 하여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하는 자는 졸업 후 D-10(구직 비자) 등 비자 변경 불허

문의

전주대학교
국제교류원

063-220-3292



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) 1345